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해설(Ⅱ)

## 10.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법11조 ①).

— 부당감액의 금지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에는 다음과 같은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법11조②).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입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아울러 법11조2항은 부당감액에 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상기예시외에 다음과 같은 원사업자의 행위도 하도급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감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지침Ⅲ-11-가).

- 하도급계약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공사금액이 경미함을 이유로 동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건설자재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내에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구실로 하여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하고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계약시 공사비의 일부이었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 일반물가·환율 및 시공에 소요된 건설자재 가격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는 동일한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다음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이 되지 않는다(지침Ⅲ-11-나).

-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적산하는 경우
- 일반물가, 환율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져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

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건설자재대, 가불금, 장비 임차료를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적산에 자유의사로 합의한 후 부당한 감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11. 물품구매대금등의 조기결제청구 금지

원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보다 조기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법12조)

※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예 : 하도급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한 경우, 원사업자는 동 물품대금을 기성이전은 물론 말할것도 없고 기성금 지급시라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당해기성을 위해 실 투입한 물량가액만을 차액하여야지 실제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면 (예 : 제1개 기성금지급시 전액차감하는 경우 등) 범위반이 된다.

### 12. 하도급대금의 지급

#### 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13조①)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이더라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것으로써 당해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60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법13조① 단서), 법운용상 본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을,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법13조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법13조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13조③)

#### 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법13조④)

○ “할인가능어음”이란 은행법 및 관련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금융기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에 의하여 어음할인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지침 I I - 6)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목적물인수일의 60일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법 13조④)

○ 할인료는 은행의 상업어음최고할인금리에 의한 할인료를 말한다. (지침 II - 7)

○ 은행의 상업어음 최고할인금리는 '88. 12. 4까지는 년 11.5% 였으나 '88. 12. 5의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로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89년 7월 현재 최고할인금리는 시중은행은 년 13.0%, 지방은행은 년 13.5%이다.

○ 따라서 앞으로 은행의 상업어음 최고할인금리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금리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된다. ('89년 7월 기준)

### 어음할인금리 적용방법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88. 12. 4 이전에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어음할인료는 년 11.5%를 적용한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88. 12. 5 이후에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어음할인료는 년 13.5%를 적용한다.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

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침 III - 12-라)

### 다. 지연이자의 지급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다만, 법13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급 기일이 60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동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13조⑤)

○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현재 년25%)에 의한 지연이자를 말한다. (지침 II - 8)

— 지연이자의 계산방법

○  $\text{지연이자} = \text{지연지급하도급대금} \times \text{지연이자율} \times \text{지연일수} / 365\text{일}$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의 60일로부터 동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는 목적물 인수일의 60일로부터 어음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어음지급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음할인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인수일의 60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연이자가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적용에 관한 기준>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할인료는 다음과 같다. (지침 III - 12-나)

지급수단	지급일, 어음만기일	지연이자 및 할인료
①현 금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②할인가 능어음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내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만기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지연이자

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계산에 있어서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다만, 법13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지급기일이 예외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로 한다.

**라.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이 되는 경우 예시**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이 된다. (지침Ⅲ-12-가)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수령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동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그러나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이 되는 경우더라도 지연이자는 하도급법13조 5항에 의거, 목적물 인수일의 60일(다만, 하도급법 13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예외로 60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참고자료)**

**하도급대금지급시 유보금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유보금제도의 근거여부 검토

- 유보금제도는 종전 건설업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동 표준하도급계약서는 '86. 2. 24 근거규정인 건설업법시

행규칙 31조가 개정 삭제되므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 이후로는 '87. 3. 16에 대한설비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제정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가 통용되고 있으며 동 계약서상에는 유보

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 하도급대금지급시 유보금의 범위반여부 검토
  - 하도급법 13조에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시 유보금에 관한 별도의 명시규정은 없다.
  - 따라서 유보금제도가 법적근거를 상실한 '86. 2. 24이후에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시 유보금이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법 13조에 위반된다.
  -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등 계약이행보증수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원사업자의 지급의무불이행을 정당한 것으로 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보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 13.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다음 경우에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 14조)
  -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령4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령4조)

### 14.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

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법16조)

-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하도급공정의 원도급정산서가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어 당초대비 10%증액되었다고 하여 하도급대금도 총액기준으로 당초대비 10%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도급정산서상의 공사비 내역별로 물량 및 단가의 변동사항이 하도급정산서에도 그대로 내역별로 반영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15.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17조)
-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본다. (지침 Ⅲ-14-②)

### 16.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법18조)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한 경영간섭이 되지 않는다. (지침 Ⅲ-13)
  - 수급사업자의 능력부족으로 인부동원, 자재구입, 특수장비의 임차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지연이 우려되어 원사업자가 이를 제

시해 준 후 동 노임 및 장비사용료의 지급과정에 간섭하는 경우

- 기 지급된 기성공사대금이 동 공사 관련자들에 따라 적절히 지급됐는지의 여부 확인
- 시공지연, 가압류, 부도발생등의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

### 17. 보복조치 또는 세법행위의 금지

- 원사업자는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19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세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20조)

### 18.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법21조①)

- 다음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지침Ⅲ-15-가)

- 수급사업자의 경영미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약점이 있음을 이용하여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시점에 시공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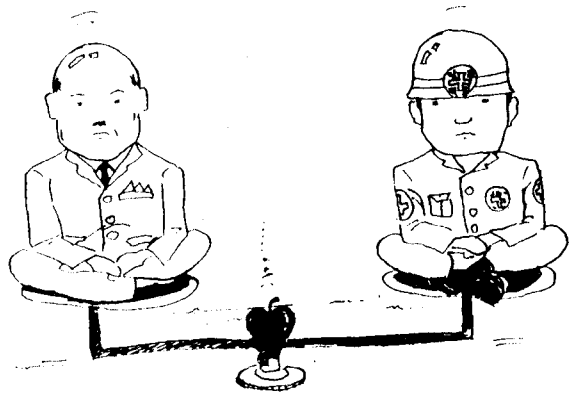
- 계약후 착공치 않거나 능력부족으로 시공이 부진한 상태에서 가불만 요구하는 행위
- 시공과정중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공사를 지연

시키거나 중도 타절하는 행위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치 않는 행위 및 수급사업자가 자기의 인부에게 노임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법21조②)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법21조③)



## Ⅲ. 운용 및 범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 1.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법22조①)

—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단서내지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법적효과는 없다.

○ 비록 신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행정상의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권실태조사〉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22조②)

2. 사건의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23조①)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도모를 위해 법24조에 의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조정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분쟁으로서 하도급법 위반사건
- 현행조정위탁범위 : 원사업자의 토건도급한도 액순위가 75위미만이 신고사건(1위~75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처리)
- 설치현황 ('85. 5 설치완료)

협 의 회 명	관장분야	설 치 장 소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건설공사	건설협회및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 전기공사하도급조정협의회	전기공사	전기공사협회
· 전기통신공사하도급조정협의회	전기통신공사	전기통신공사협회
· 소방시설공사하도급조정협의회	소방시설공사	소방안전협회

— 구성 및 기능

구 성	기 능
· 공 익 대 표 · 원 사업 자 대 표 · 수 급 사업 자 대 표  각 3 인	· 하도급분쟁사건의 조정 · 조정성립시 정부의 시정 조치와 동일한 효과.

조정의 공정성 보장

조정의 실효성 확보

자율조정으로 협조분위기 확산

— 조정불성립시의 조치 : 협의회는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처리한다.

4.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법25조①)

○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사건의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해당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

조치의 실효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 조치할 수 있다. (공정거래사건절차규정 15조 2호)

- 법위반행위가 이미 없어졌을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사건 절차규정 36조①)
-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한다. (법25조④)

—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응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조치한다. (법30조②, 32조)

—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외에 상습위반정도에 따라 직권실태조사 실시, 언론보도 및 홍보, 검찰에 고발하거나, 정부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키는등의 제어조치를 병행추진할 수 있다.

## 5.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원사업자의 이의신청

—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사업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27조①)

— 그러나 신고인은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단서내지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불과하고 그 이상의 법적 효과는 없다. (비록 신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행정상의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의하여 신고인이 피해구제의 효과가 있더라도 이는 법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결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류신고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해당한다.

## 6. 벌칙

### (1) 벌칙의 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30조①)

-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 법상 규정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류를 작성·보존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물품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선금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수령거부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물품구매대금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30조 ②)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요소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법31조)

**(3) 벌칙의 적용 : 고발(법32조)**

—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법33조).

—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지침Ⅲ-4).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원하지

- 않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등

**8. 기타 법운용 관련 사항**

**(1) 하도급법에서의 기간 계산**

— 하도급법에서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일이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지침Ⅲ-5)

**(2) 회사의 행위로 간주되는 임·직원의 행위**

—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지침Ⅲ-2-가)  
 —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대리이사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지침Ⅲ-2-나)

**(3) 하도급대금 상계 처리**

—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는 이들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침Ⅲ-3)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26조①)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도급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26조②)

**(5) 종결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사망·해산·도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 조치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공정거래사건절차규정 42조)

—이 경우 종결처리란 단순히 시정조치의 불이행을 문제삼지 않고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의미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결처리가 있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나 직권인지에 의한 심결재개는 가능하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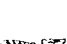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한다. (법34조)

(7/20~8/20)

**띠별로 본 이달의 운세**



한국정역철학회 중앙회장 백운선 (TEL : 678-1170, 672-1170)

	<p>이달의 운세는 관재를 조심하라. 다른사람과 다투면 해결책이 없이 꼬이게 된다. 다만 재물운은 있으니 남과의 다툼만 자제하면 관청은 운이다. 길일 26. 30. 7. 11일</p>		<p>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해 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꾸준히 실력을 쌓고 기다리면 조만간 때가 오며 기다린만큼의 댓가도 주어진다. 사업자는 세무사찰에 대비할것. 길일 24. 1. 5. 13일</p>
	<p>밖에서 재물을 구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면 구설이 따른다. 두마음이 하나되기 어렵고 대립되니 동업이나 새일을 꾸미지 말것. 무조건 양보만인 해결책이다. 길일 22. 27. 8. 15일</p>		<p>가까운 사람과의 동업이나 신용보증서등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매사를 확실하게 처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하라. 길일 21. 25. 6. 14일</p>
	<p>귀인이 곁에 있어 재수와 이익이 많다. 마치 가을쥐가 곡식이 가득찬 창고를 얻은격으로 식욕이 있고 심신이 안정된다. 길일 28. 1. 9. 13일</p>		<p>주변이 안정되고 여건이 성숙되니 계획한 일이 있다면 힘껏 추진해 보도록. 특히 문서로 인한 이익이 예상되며 매매, 이동거래관계가 대길하다. 길일 22. 7. 15. 19일</p>
	<p>재물운은 있으나 들어온 즉시 소비되어 모이지 않는다. 일을 폐하는 것은 많지만 이익을 쉽게 얻지 못하니 순조롭기만을 기다리지말고 치밀한 계획하여 진진 할 것. 길일 21. 29. 10. 14일</p>		<p>과욕이 해를 부른다. 일은 확장하지 말고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며 분수에 맞는 일을 진행해야 무리가 없다. 길일 23. 4. 8. 16일</p>
	<p>다른일을 도모하지 말라. 일을 벌여도 이익을 얻기 어렵고 경영하더라도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을 것이라 허망하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길일 22. 26. 11. 15일</p>		<p>남은 눈(雪)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백가지 풀들이 나오지 못하는 격이다. 집안사람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오해가 많으니 지혜롭게 처신해야 길운을 맞힌다. 길일 24. 5. 9. 17일</p>
	<p>자신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 생활은 안정계도에 들어서며 사방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성실하게 임하면 길운이 유지된다. 길일 23. 3. 4. 15일</p>		<p>시험을 치는 사람은 합격을 기대해도 좋고 직장인은 승진운이 있다. 재물운이 있어 처부할 수 있는 기회이며 특히 관운이 있다. 길일 25. 6. 10. 18일</p>